## 소규모 합병 공고

㈜프로텍은 상법 제 527 조의 3 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㈜피에스와 소규모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래 -

- 1. 합병 방법 : ㈜프로텍이 ㈜피에스를 흡수합병함.
- 2. 합병 비율 : ㈜프로텍 : ㈜피에스 = 1:0
- 3. 소멸회사의 현황
- 1) 상호 : ㈜피에스 (본사 소재지 :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(산학협동관 304호))
- 4. 합병 기일 : 2018 년 4월 17일
- 5. ㈜프로텍과 ㈜피에스와의 합병은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.
- 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- 1) 행사절차 : 2018 년 2월 27일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하여 합병에 대한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- 2) 제출기간 : 2018년 2월 28일 ~ 2018년 3월 14일
- 3) 행사방법 및 장소
- 가) 명부주주 : 2018 년 3월 14일까지 ㈜프로텍 경영관리팀에 제출(☎ 031-470-0700)
- 나) 실질주주 : 2018 년 3 월 11 일까지(※ 명부주주보다 3 일전) 거래증권회사에 제출
- 4)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- 5)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승인을 얻어야 함.

2018년 2월 28일
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 번길 11-14 주식회사 프로텍 대표이사 최승환

##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

(주)프로텍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㈜프로텍과 ㈜피에스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주주번호	주주명	
소유주식의 종류	소유주식수	

2018 년 월 일

성명: 주민등록번호:

주소 :